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30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제 4 -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9나210841 사해행위취소
원고, 항소인	[redacted]시
	소송대리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A
	소송대리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8가단111915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7. 21.
판 결 선 고	2020. 9. 15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12 지분에 관하여 2015. 10. 30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12 지분에 관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홍천등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30

기소 2015. 11. 3. 접수 제22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4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B는 2015. 6. 4. C, D과 사이에 B 소유의 [redacted]시 E 대 343㎡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.

나. 원고는 2015. 9. 30. B에게 2015. 11. 30.까지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7,438,760원(체납가산금 포함)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, B는 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.

다. 한편 B는 2015. 10. 30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12 지분(이하 '이 사건 콘도'라 한다)을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하고 2015. 11. 3. 피고에게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22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

라. 이 사건 콘도는 위 증여 당시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, 그 시가는 3,500만 원 정도였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30

마. B와 피고는 1994. 2. 5.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F생, G생, H생인 자녀를 3명 두었는데, 2016. 2. 5.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([redacted]지방법원 2016호협252), 2016. 5. 27. 미성년인 자녀 2명의 양육비로 B가 1인 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다음 2016. 5. 30.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2호증, 을 제1, 2호증,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청구원인 및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이혼급부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 단

1) 채무자 B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콘도를 처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2)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본다. 이 사건 콘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'2015. 10. 30. 증여'를 원인으로 경료되었는데, 이는 2016. 2. 5.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과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, 당사자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30

사이에서 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으며,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인 재산분할로서 위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

3) 가사 위 재산분할로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위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.

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콘도는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, 그 시가는 3,500만 원 정도였는데, B는 자신이 부담하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함이 없이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이 사건 콘도마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.

② 반면에 피고는 그 명의로 시가 5억 5,000만 원 상당의 [redacted]시 L아파트(2011. 3. 취득 전용면적 124.470㎡, 다만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8,800만원, 3,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됨, 갑 제13, 23호증)를 보유하고 있었고, 자본금 1억 원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(갑 제14호증),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벤츠 승용차(2013년식, S350 모델)를 이용하고 있었다(갑 제23호증).

③ 별도로 B는 미성년이던 2명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1인당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, 이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각 남은 기간은 23개월, 56개월 정도였다.

④ 혼인기간이 22년 정도이고,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, 위 재산분할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보인다. 위 재산분할 경위에 대한 피고의 별다른 설명은 없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30

4)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30

(별지)

부 동 산 목 록

1. 1동 건물의 표시

[redacted]도 [redacted]군 I에 있는 J건물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10층 숙박시설(휴양콘도미니엄) 및 부대시설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내지 10층.

2.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[redacted]도 [redacted]군 I 대 20673㎡

3.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제8층 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1.28㎡. 끝.